

# 2022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 맞는 맞춤형 고성장 지원을 위한 『SW고성장클럽』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1. 공통 사항

### 가.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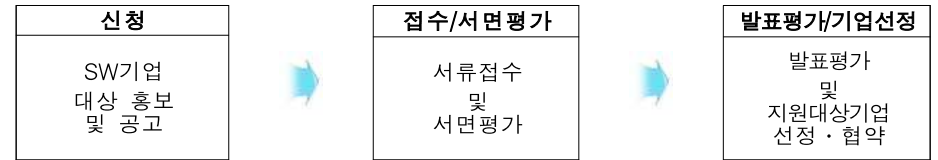
- SW산업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SW 고성장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 사업
- SW기술 역량 강화, SW기업 육성 등을 통해 SW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성장 가속화 지원
- 향후 고성장이 유망하거나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국내 SW기업에게 혁신적 기술·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 지원

\*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미국 사례) 5%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 '17년 500대 테크분야 고성장기업에서 SW기업은 293개(59%) 차지('17, Deloi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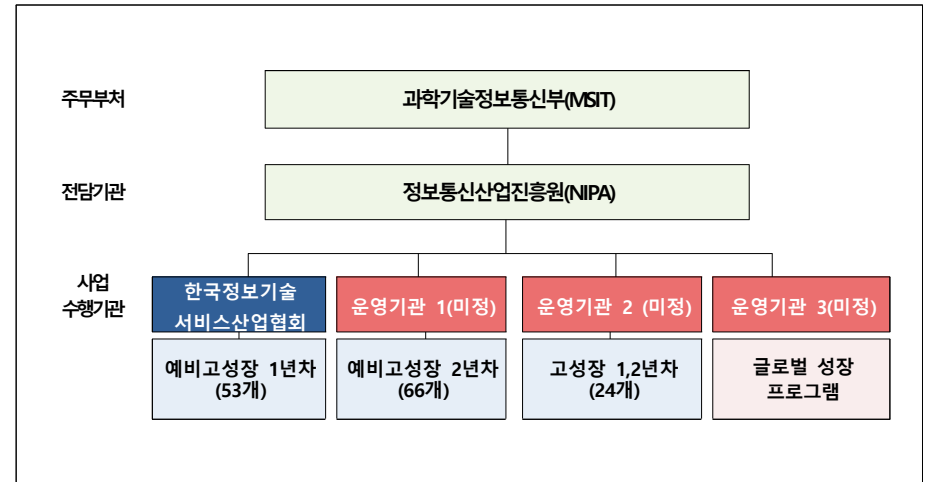
### 나. 주요내용

- 예비고성장·고성장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비R&D)

### 다. 지원절차



### 라. 사업 운영체계



※ '22년도 신규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며 선정완료('22년 2월 말) 후 공지 예정

## 2. 세부 안내사항

### 가.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성장가능성·혁신성·글로벌 지향성이 높으며, AI·VR/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SW기업

\* 예비고성장기업/고성장기업 중복지원 불가

○ (예비고성장기업)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공고일 기준(2015년 2월 9일 이후 창업기업)

○ (고성장기업)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CAGR<sup>1</sup>)인 기업

\* 고성장기업은 2019년~2021년 연말기준 종사자수 10인 이상(대표 제외)

< 지원 프로그램(안) >

분류	세부 내용
자율과제 지원	▶ 성장목표 및 이행과제를 사업금액 내에서 자율 설계(지원기업)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 글로벌 성장 지원 전문가 등으로 고성장지원단(고성장PD)을 구성하여 기업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춤형 멘토링 제공 ▶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성장 인센티브 지원 ▶ 예비·고성장기업들에게 정보 교류,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 상호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유치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예비고성장기업) 53개 / 기업당 총 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85백만원/기업부담금 15백만원)

○ (고성장기업) 12개 /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정부지원금 250백만원/기업부담금 50백만원)

□ (접수기간) 2022. 02. 09(수) ~ 2022. 03. 10(목) 15:00\* / swgo.kr\*\*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접수 불가)

\*\* (절차) SW고성장클럽 홈페이지 접속 → '사업공고 및 접수'에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 시 담당자 문의

### 나. 선정 및 평가

□ (선정절차) 별도의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평가 상위기업 선정(상대평가)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내용은 별첨 안내문 참고

사업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선정	(필요시) 사업 심의위원회
'22.02.09 ~ '22.03.10	'22년 3월 중	'22년 3월 중	'22년 3월 중

○ (서면평가)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협약체결 대상 기업 선정

□ (선정기준) 성장가능성, 혁신성, 글로벌지향성 항목을 예비고성장기업 4:3:3, 고성장기업 3:3:4 비율로 평가

구분	세부 기준	주요 내용(안)	배점	
			예비	고성장
성장 가능성	성장전략 계획 적정성	- 성장목표(매출, 고용) 도전성 -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과제/지표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40	30
	성장잠재성	- 제품/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주요 고객/시장, 투자 유치 등 기업 성장 전반의 잠재성		
혁신성	기술 혁신성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R&D 투자 비중, 인증 등 혁신적인 기술 수준 - 조직구성 등 제반환경, 우수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준	30	30
	기술 경쟁력	- 기술 경쟁력, 시장 점유율, 파급력, 확산 가능성 수준		
	지속 가능성	- 기술 고도화 목표/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 실현 가능성		
글로벌 지향성	글로벌 경쟁력	-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보 수준 -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제품/솔루션 경쟁우위 수준	30	40
	글로벌 진출 계획 구체성	- 해외진출 희망 시장에 대한 경쟁제품·서비스 분석/이해 수준 - 목표 해외시장의 설정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율 과제 연계성		
	글로벌 진출 수준	-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및 해외 관계사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해외 매출액 현황 및 목표 수준		

\* 지역 소재(본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 제외)인 예비·고성장기업은 가점 1점 부여

- (결과 발표) 3월 중(예정),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개별통보
- (최종선정 후 일정) 지원기업의 사업수행계획서 최적안 조정 및 협약 체결 예정
  - 지원기업은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22.12월 초) 및 위탁 정산보고서('22.12월 중) 제출

#### 다. 규정 등 준수사항

- (관련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지침\*, NIPA 지원사업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일부 준용)
  - \* 부속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등
- (지원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결과(연차)평가 탈락 또는 지원기간 2년 초과 기업(단, 예비고성장 수료기업은 고성장기업 신규 지원 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연차평가 합격 후 2년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지원기업 모집공고 이전 협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유사 내용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① SW수출마케팅지원사업, ② 수출형 SW제품화 지원사업, ③ 글로벌SW신산업수주 지원사업에 선정(예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상장기업
- 최대주주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규제중인 경우
  - \* 다만, 접수마감일 기준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증빙 가능할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다만, 접수마감일 기준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다만, 접수마감일 기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정보 제공 동의) 지원기업은 수행 과정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 선정 이후, 통합해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 (개인정보 보안의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부속지침 중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1항 5호 참고

### 3. 기타 사항

#### 가. 담당자 및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처
신청문의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IT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관련 백종선 실장 ☎(02)761-2069/jsbaik@itsa.or.kr 나민주 책임 ☎(02)761-2056/mjna@itsa.or.kr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li> <li>■ 전산접수 관련 이아람 담당 ☎(02)2135-6137/arlee@itsa.or.kr</li> </ul>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나.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1부 및 각종 부속서류
  - ※ SW고성장클럽 안내서 참고